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2021. 10.

보 건 복 지 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보건복지부 소관 일몰규제 및 일부 신설·강화 규제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정비가 필요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14개 보건복지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국무조정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14개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령(안)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14개 보건복지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39조의6에 따른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2022년 1월 1일

제2조(「환자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의3에 따른 지역환자 안전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6조에 따른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2022년 1월 1일

7. 제17조의3에 따른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2022년 1월 1일

제5조(「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혈액관리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수혈관리실 인력 및 교육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별표 4에 따른 보안전담인력 기준: 2022년 1월 1일

7. 제37조에 따른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2022년 1월 1일

제7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

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 2022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 2020년 1월 1일

제8조(「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조 및 별표 2에 따른 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 2022년 1월 1일

제9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4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에 대하여 내용, 방법 및 인권교육기관 지정 등: 2022년 1월 1일

5. 제29조 및 별표 9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및 설비 기준: 2022년 1월 1일

제11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0조의3 및 별표 1의2에 따른 장례식장 가격표의 게시·등록 방법 등: 2022년 1월 1일

6. 제20조의5에 따른 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등: 2022년 1월 1일

7.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 2022년 1월 1일

제12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7조의2에 따른 인권교육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

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의6 및 별표 2의2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별표 1 제3호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비기준: 2022년 1월 1일

7. 별표 1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 2022년 1월 1일

8. 별표 2 제1호 나목에 따른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배치기준: 2022년 1월 1일

- 9. 별표 2 제1호 라목에 따른 영양사 배치 기준: 2022년 1월 1일
- 10. 별표 4에 따른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2022년 1월 1일
- 11. 별표 7 제1호에 따른 장기 미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기준: 2022년 1월 1일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생략)	제7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1. 제4조에 따른 면허증 발급: <u>2016년 1월 1일</u>	<u><삭 제></u>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8. 제39조의6에 따른 보안장비 <u>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u> <u>등: 2022년 1월 1일</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 부장관은 제3조의3에 따른 지 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 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 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7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 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심뇌혈 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 정절차에 대하여 2022년 1월 1 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 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 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7조(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설></u>	6. 제16조에 따른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2022년 1월 1일
<u><신설></u>	7. 제17조의3에 따른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 2022년 1월 1일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 수행 방법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 수행 방법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u>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수혈관리실 인력 및 교육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u>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 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 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 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제53조(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u>6. 별표 4에 따른 보안전담인력</u> <u>기준: 2022년 1월 1일</u>
<u><신 설></u>	<u>7. 제37조에 따른 지정정신의료</u> <u>기관의 지정기준 등: 2022년 1</u> <u>월 1일</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34조(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② (생략)	<u>제34조(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 2022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 2020년 1월 1일 ② (현행과 같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제4조 및 별표 2에 따른 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 2022년 1월 1일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8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 부장관은 별표 4에 따른 교육 기관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 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 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u>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제1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에 대하여 내용, 방법 및 인권교육기관지정 등: 2022년 1월 1일
<신설>	5. 제29조 및 별표 9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및 설비 기준: 2022년 1월 1일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26조(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1. ~ 4. (생략) <u><신설></u>	제26조(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제20조의3 및 별표 1의2에 따른 장례식장 가격표의 게시·등록 방법 등: 2022년 1월 1일</u> 6. <u>제20조의5에 따른 장례식장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등: 2022년 1월 1일</u> 7. <u>제22조에 따른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2022년 1월 1일</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 부장관은 제27조의2에 따른 인 권교육에 대하여 2022년 1월 1 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 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 부장관은 제7조의6 및 별표 2 의2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신청에 필요한 첨부 서류: 2019년 1월 1일	<삭제>
4. 제32조의3에 따른 평가인증의 유효기간 : 2019년 1월 1일	<삭제>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신설>	6. 별표 1 제3호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비기준: 2022년 1월 1일
<신설>	7. 별표 1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 2022년 1월 1일
<신설>	8. 별표 2 제1호 나목에 따른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배치기준: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② (생 략)	<u>2022년 1월 1일</u> <u>9. 별표 2 제1호 라목에 따른 영</u> <u>양사 배치 기준: 2022년 1월 1</u> <u>일</u> <u>10. 별표 4에 따른 보육관련 교</u> <u>과목 및 학점: 2022년 1월 1</u> <u>일</u> <u>11. 별표 7 제1호에 따른 장기</u> <u>미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u> <u>실시 기준: 2022년 1월 1일</u> ② (현행과 같음)
--	--